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문화정책실,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, 보훈문화정책실 현충시설정책과 및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입법예고(2026. 3. 9. ~ 3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보훈부령 제 호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0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6년 3월 31일”을 각각 “2028년 3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